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민원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고,
- 근거법령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수정,
-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 사무를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재위임 사무 신설(안 별표 1)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다음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 명령

- 청문
- 과태료의 부과·징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과 관련한 다음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나. 법령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1)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합 물류터미널사업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
 -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의 등록
 -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
 - 복합화물터미널에 따른 준용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주선 사업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
 - 운송가맹점 변경신고
 - 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 진단 등(13호 너, 14호 타)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권한 및 심사위원회 구성업무

-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
 - 용도폐지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대장, 등기부등본과 도면의 비치, 실태 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 복사, 초본의 교부 청구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
 - 독립가의 선정
 - 독립가에 대한 지원
 - 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다. 기타 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사무 등 정비(안 별표 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주선사업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당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조항 및 사무 변경
 -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9호. 다) (법 제3조제7항 → 법 제3조제9항)
 -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10호. 나) (법 제24조제5항 → 법 제24조제7항)
 - 허가취소 청문 (법 제28조 → 법 제22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당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조항 및 사무 변경

- 매장문화 유존지역에서의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로 한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사업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 한다.(법 제8조제1항·제2항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당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조항 및 사무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 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법 제31조제4항 및 5항 →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사후관리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시정명령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 징수 → 사후관리(폐쇄 등)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시정명령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 징수 등
 -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
(법 제31조제6항 → 법 제31조제7항)
 -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법 제31조제9항 → 법 제31조제10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지정폐기물 처리 증명에 관한 다음 사무의 권한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조항 변경
 -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
(법 제17조제3항·제4항 → 법 제17조제5항·제6항)
 - 보고서의 제출 명령
(법 제38조제2항 → 법 제38조제3항)

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사무 변경사항 조정(안 별표 1)

1) 부서명칭 변경

-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가족행복과
- 생활경제교통과 → 민생경제과
- 국제통상과 → 외교통상과
- 농촌개발과 → 농촌활력과
- 물산업과 → 맑은물정책과
- 도로철도공항과 → 도로철도과
- 항만물류과 → 독도해양정책과

2) 부서 신설·통폐합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4호부터 15호까지 업무
 - 생활경제교통과 → 교통정책과

3.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월 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정책기획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전 화 : 054-880-2126, Fax 054-880-2149, 이메일 : lgh3087@korea.kr

의견제출서

규칙명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규칙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민원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고,
- 근거법령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문구수정,
-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 사무를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재위임 사무 신설(안 별표 1)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다음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 명령
 - 청문
 - 과태료의 부과·징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과 관련한 다음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나. 법령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1)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
 -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의 등록
 -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
 - 복합화물터미널에 따른 준용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주선사업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
 - 운송가맹점 변경신고
 - 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 진단 등(13호 너, 14호 타)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권한 및 심사위원회 구성업무
-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
 - 용도폐지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대장, 등기부등본과 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 복사, 초본의 교부 청구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
 - 독립가의 선정
 - 독립가에 대한 지원
 - 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다. 기타 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사무 등 정비(안 별표 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주선사업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당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조항 및 사무 변경
 -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9호. 다) (법 제3조제7항 → 법 제3조제9항)
 -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10호. 나) (법 제24조제5항 → 법 제24조제7항)
 - 허가취소 청문 (법 제28조 → 법 제22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당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조항 및 사무 변경
 - 매장문화 유존지역에서의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사업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로 한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사업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 한다.(법 제8조제1항·제2항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당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조항 및 사무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 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법 제31조제4항 및 5항 →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사후관리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시정명령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 징수 → 사후관리(폐쇄 등)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시정명령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 징수 등
 -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
(법 제31조제6항 → 법 제31조제7항)
 -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법 제31조제9항 → 법 제31조제10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지정폐기물 처리 증명에 관한 다음 사무의 권한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조항 변경
 -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
(법 제17조제3항·제4항 → 법 제17조제5항·제6항)
 - 보고서의 제출 명령
(법 제38조제2항 → 법 제38조제3항)

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사무 변경사항 조정(안 별표 1)

1) 부서명칭 변경

-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가족행복과
- 생활경제교통과 → 민생경제과
- 국제통상과 → 외교통상과
- 농촌개발과 → 농촌활력과
- 물산업과 → 맑은물정책과
- 도로철도공항과 → 도로철도과
- 항만물류과 → 독도해양정책과

2) 부서 신설·통폐합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4호부터 15호까지 업무
 - 생활경제교통과 → 교통정책과

3. 개정규칙안 : 붙임

4. 관련법령 : 붙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5. 기타 사항

가. 규제심사(법무혁신담당관실): 별도협의

나. 부패영향평가(감사관실): 별도협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행복과): 별도협의

라. 비용추계(예산담당관): 별도협의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1항 관련)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민 생 경 제 과	1.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및 명령 검사 권한 중 다음의 권한 가. 가격표시 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 나. 가격표시 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권한 다. 소매가격표시점포 지정권 라. 가목 및 나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권 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숙박업,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권 3. 도·소매업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관련 명령, 검사에 관한 권한 및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권 4.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5. 새마을금고의 정관변경의 인가 6. 새마을금고의 합병인가 7.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8.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정명령 9.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의 취소 10.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청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 「새마을금고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제37조제3항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같은 법 제74조제3항 같은 법 제74조의3제2항 같은 법 제83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민 생 경 제 과	11.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폐전·폐업 및 허가의 변경·허기취소·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 12. 「소금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청문에 관한 사항 13. 갯내 실측도 및 광업부의 작성·비치의 확인, 부분 접수 14.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15. 광물생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6.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17. 「광업법」 제84조를 위반하여 갯내 실측 도와 광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 하거나 그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18. 「광업법」 제45조에 따른 채굴행위의 지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제26조 같은 법 제57조 「광업법」 제45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3조 및 제104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104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04조제3항제2호	시장·군수
사 회 적 경 제 과	부정경쟁 방지업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2.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 의견청취 4.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20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교통 정책과	<p>1.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권한(시외버스는 제외한다)</p> <p>가. 사업면허 또는 등록</p> <p>나. 수송 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승인</p> <p>다. 운임·요금 신고수리 및 인가(운임·요금기준 및 요율은 제외한다)</p> <p>라. 운송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 수리</p> <p>마. 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 및 신고 수리, 사업계획 변경제한</p> <p>바. 사업관리위탁 신고 수리</p> <p>사. 사업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인가, 양도·양수제한, 법인합병 신고 수리</p> <p>아. 상속 신고수리</p> <p>자.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p> <p>차.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수리 및 처리</p> <p>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과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업무(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p> <p>타.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사업계획 변경·개선명령·사업구역 조정시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부동의시 시도지사에게 조정신청)</p> <p>파. 차령연장</p> <p>하. 사업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정지명령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9조</p> <p>같은 법 제10조</p> <p>같은 법 제13조</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15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19조</p> <p>같은 법 제23조제1항10호 및 제23조제2항</p> <p>같은 법 제78조</p> <p>같은 법 제84조제2항</p> <p>같은 법 제85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교통 정책과</p>	<p>거. 청문 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다. 과태료 부과 · 징수와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통보</p> <p>2.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p> <p>3. 자동차의 검사(자동차 검사 대행자 및 지정정비업자가 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p> <p>4.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증</p> <p>5.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의 지정(수리 및 사용검정으로 한정한다)과 이에 대한 개선명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p> <p>6.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p> <p>7.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8.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p> <p>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신규허가 · 변경허가 나. 영업소 설치허가 · 허가증교부 개서 등 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라.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마. 개선명령 바. 양도 · 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사. 상속의 신고 아. 휴업 및 폐업신고 자. 허가취소 ·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명령</p>	<p>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p> <p>「교통안전법」 제54조</p> <p>「자동차관리법」 제43조</p> <p>같은 법 제47조제1항</p> <p>같은 법 제47조제2항·제4항</p> <p>같은 법 제69조</p> <p>같은 법 제74조</p> <p>같은 법 제74조</p> <p>「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1조 같은 법 제3조제9항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제1항</p>	<p>시장·군수</p>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교 통 정 책 과	차. 자동차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타. 허가취소 청문 파.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하.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의 청문 거.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종료일 통지의 수령 너. 과태료부과·징수 1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취소 청문 나. 신규허가 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라. 영업소 설치허가.허가증교부.개서 등 마.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바. 운송주선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사. 개선명령 아.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자. 상속의 신고 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 계획 수립 카. 휴업 및 폐업신고 타.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종료일 통지의 수령 파.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7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41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8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교통 정책과</p>	<p>1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p> <p>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p> <p>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p> <p>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p> <p>1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p> <p>가.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p> <p>나. 사업의 휴업·폐업의 신고수리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p> <p>다.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p> <p>라.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p> <p>마.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p>	<p>「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제1항</p> <p>같은 법 제29조제2항</p> <p>같은 법 제31조</p> <p>같은 법 제32조제1항</p> <p>「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p> <p>같은 법 제14조제2항</p> <p>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항</p> <p>같은 법 제17조제1항</p> <p>같은 법 제18조</p> <p>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항</p>	<p>시장·군수</p>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교통 정책과</p>	<p>바.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사.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아.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13.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나.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 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 다. 청문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p>	<p>같은 법 제61조제2항</p> <p>같은 법 제62조제1호 및 1호의2</p> <p>같은 법 제67조</p> <p>「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호</p> <p>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호</p> <p>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호</p> <p>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호</p>	<p>시장·군수</p>
<p>외교 통상과</p>	<p>1. 수입통관되어 국내 유통중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여부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p> <p>2. 수입통관되어 국내 유통중인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권한</p>	<p>「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 제4항제3호</p> <p>「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16조 제4항제4호</p>	<p>시장·군수</p>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치행정과	<p>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시·군 단위 이하 출력 자료에 관한 승인권</p> <p>2.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에 관한 다음 권한</p> <p>가. 의료급여 및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p> <p>나. 학력확인서 및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p> <p>다. 주택교환에 관한 사항</p> <p>라. 직업훈련,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p> <p>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상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p> <p>바.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p> <p>사.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p> <p>아. 지역 내 종교·민간단체 등과 결연·후원 추진</p> <p>자. 기타 무연고 사망 북한 이탈주민의 사후처리 등 거주지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p>	<p>「주민등록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p> <p>「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회 계 과	<p>국유 일반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2.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및 처리 3.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관한 사무 4. 국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대부료 부과 징수 5. 매각 6. 신탁 7. 대장과 실태조사 8. 변상금 징수 9. 불법시설물의 철거 10. 은닉재산 등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11.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도지사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p>「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3항</p> <p>같은 법 제9조, 제41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8조제1항 및 제3항</p> <p>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p> <p>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p> <p>같은 법 제46조 및 제47조</p> <p>같은 법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p> <p>같은 법 제58조</p> <p>같은 법 제66조</p> <p>같은 법 제72조·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2조</p> <p>같은 법 제74조</p> <p>같은 법 제77조·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7조</p> <p>같은 법 제25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p>	시장·군수
문 화 예 술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담보제공의 허가 2.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p>「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p> <p>같은 법 제9조의2제1항</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 화 예 술 과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시장·군수
문 화 산 업 과	도서정가제와 간행물 유통질서 관련 금지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시장·군수
문 화 유 산 과	1. 문화재 관람료 징수 2. 매장문화재 조사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사업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나.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보존 조치. 다만,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다.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	시장·군수
체 육 진 흥 과	체육시설용지로의 초지전용 추천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시장·군수
친 환 경 농 업 과	양곡의 소유자, 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수출, 수입, 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 공무원의 증표 발행	「양곡관리법」 제27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농 촌 활 력 과	<p>1. 「국유재산법」에 따른 다음 사항</p> <p>가.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관리·처분</p> <p>나. 농업기반시설용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취득</p> <p>다.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p> <p>라.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기간갱신 취소와 철회</p> <p>마.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및 면제</p> <p>바. 농업기반시설용 행정재산 등의 관리소홀에 관한 제재</p> <p>사.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p> <p>아.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p> <p>자.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내의 불법 시설물의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p> <p>차.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과오납금 및 반환가산금의 반환</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3호</p> <p>「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p> <p>같은 법 제12조</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30조, 제35조 및 제36조</p> <p>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p> <p>같은 법 제39조</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72조 및 제73조</p> <p>같은 법 제74조</p> <p>같은 법 제75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농 촌 활 력 과	<p>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개수·보수, 준설(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은 제외 한다), 개간에 관한 다음 사항</p> <p>가. 예정지 조사</p> <p>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p> <p>다. 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고시 및 변경 승인·고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p> <p>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승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p>	<p>「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 까지</p> <p>같은 법 제14조제2항</p>	시장·군수
환 경 정 책 과	<p>1.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p> <p>2.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p> <p>3.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p> <p>4.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 납부허가 및 허가 취소</p> <p>5.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 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설치 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p> <p>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p> <p>「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 과	<p>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 처리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시장·군수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p> <p>나.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p> <p>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 중지명령 및 폐쇄명령</p> <p>라.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p> <p>마. 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p> <p>바. 사후관리(폐쇄 등)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시정명령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 징수 등</p> <p>사.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예치, 납부, 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p> <p>아.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p> <p>자.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 제한 등</p> <p>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p> <p>카.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 사후관리 제외대상 시설의 인정</p> <p>타.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 대상 시설의 통지</p> <p>파.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비용명세서의 수리</p>	<p>「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p> <p>같은 법 제31조제2항</p> <p>같은 법 제31조제3항</p> <p>같은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p> <p>같은 법 제31조제7항</p> <p>같은 법 제31조제10항</p> <p>같은 법 제50조</p> <p>같은 법 제51조</p> <p>같은 법 제52조</p> <p>같은 법 제54조</p> <p>같은 법 제68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단서</p> <p>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 과	<p>하.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p> <p>거.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p> <p>너.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담보물의 접수</p> <p>더. 사후관리 불이행자에 대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증당, 차액반환</p> <p>러.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시 사후관리 이행율의 결정</p> <p>머.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서의 수리</p> <p>버.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 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 결정서의 교부</p> <p>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사전 적립계획서 접수</p> <p>어.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사전 적립금의 납부 통보</p> <p>저.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서의 수리</p> <p>처.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의 토지에 대한 토지용도, 용도 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p> <p>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임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p> <p>나. 보고서의 제출 명령</p> <p>8.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제품의 사용의무에 따른 의무사용 계획서 접수 및 내용 통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권고 또는 시정 조치 명령</p>	<p>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28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p> <p>같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p> <p>같은 법 제38조제3항</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호 및 제2호</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과	<p>9. 「환경보건법」에 따른 다음의 사무</p> <p>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명령</p> <p>나.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10.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신청 처리</p> <p>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수검명령</p> <p>다.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p> <p>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p> <p>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p>	<p>「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p> <p>같은 법 제29조제1항</p> <p>같은 법 제33조제1항</p> <p>「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p> <p>같은 법 제62조</p> <p>같은 법 제62조의3</p> <p>같은 법 제62조의4</p>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p>	시장·군수
환경 안전과	<p>1. 사업장 규모별 구분에 의한 3~5종 사업장 중 다음 사항(대기 또는 수질 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 및 그 사업장과 함께 폐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은 제외한다)</p> <p>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p> <p>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p> <p>다. 방지시설의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위반시의 허가 취소 등</p> <p>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수리, 점검 및 오염도 검사 등</p>	<p>「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p> <p>같은 법 제34조</p> <p>같은 법 제35조제3항</p> <p>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안전과	<p> 마.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 명령 등 사. 배출시설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아.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의 명령 자.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감면·조정 및 징수유예 차.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폐쇄 또는 조업정지 명령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처분, 배출시설의 인정 타.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파.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하.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거. 보고 및 검사, 오염도 검사 의뢰 너. 위임권한에 대한 청문 더. 과태료 부과·징수 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기간 연장 신청 수리 며. 기준이내배출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조정 2.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변경 신고 수리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3.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 확인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다음 사무 가.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p>	<p>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4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제68조제2항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61조제2항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 제3항 </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안전과	<p>나.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p> <p>다. 안전조치 조치명령</p> <p>라.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p> <p>마.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p> <p>바. 과태료의 부과·징수</p> <p>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임된 다음의 권한(대기 또는 수질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 및 그 사업장과 함께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대기, 폐수배출시설은 제외한다)</p> <p>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p> <p>나. 영업정지명령</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같은 법 제24조제2항</p> <p>같은 법 제25조제3항</p> <p>같은 법 제29조제1항</p>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2항 및 제3항</p> <p>「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p> <p>같은 법 제43조제1항</p> <p>같은 법 제49조</p>	시장·군수
맑은물 정책과	<p>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및 공고</p> <p>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제품 등의 수거 등 권고</p> <p>나. 권고에 따라 조치한 경우의 결과보고</p> <p>다.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그 사실 공표</p> <p>라.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수거 등 명령 및 그 사실 공표</p> <p>마. 수거 등 명령 조치한 경우의 결과보고</p> <p>바. 수거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직접 제품등의 수거 등 실시 및 그 비용 징수</p>	<p>「수도법」 제7조</p> <p>같은 법 제14조의3제1항</p> <p>같은 법 제14조의3제1항</p> <p>같은 법 제14조의3제3항</p> <p>같은 법 제14조의4제1항</p> <p>같은 법 제14조의4제2항</p> <p>같은 법 제14조의4제3항</p>	시장·군수
산림 자원과	<p>1. 목재 합판 생산·이용증진 및 안정적 수급 관리</p>	<p>「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식품의약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구입서 등 관리 2. 몰수마약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3. 의료기기 수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리업 신고의 수리 나. 수리업 신고의 변경신고 수리 다. 폐업·휴업·재개 신고 수리 라.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및 수거 마. 검사명령 바. 회수, 폐기, 그 밖의 처치 명령 및 공표 명령 사. 폐기, 봉합·봉인, 그 밖의 필요한 처분 아.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자. 영업소 폐쇄 및 업무정지 차.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카. 영업소 폐쇄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청문 타. 신고수리서의 갱신 파. 수수료의 징수 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p>「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p> <p>같은 법 제53조</p> <p>「의료기기법」제16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32조</p>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34조</p> <p>같은 법 제34조</p> <p>같은 법 제34조</p> <p>같은 법 제35조</p> <p>같은 법 제36조</p> <p>같은 법 제38조</p> <p>같은 법 제39조</p> <p>같은 법 제49조</p> <p>같은 법 제50조</p> <p>같은 법 제56조</p>	시장·군수
도시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체비지 중 그 일부를 집단으로 정하는 명령 2.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 공고 등 3.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 공고 4.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른 관계기관장과의 협의 	<p>「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 구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54조</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31조제1항</p> <p>같은 법 제80조의2제2항</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p>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건설업의 등록신청의 접수, 내용 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내용 확인·수리</p> <p>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내용 확인·수리</p> <p>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p> <p>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 수첩의 교부·재교부</p> <p>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p> <p>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p> <p>사. 시정명령·지시</p> <p>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p> <p>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p> <p>차.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p> <p>카. 청문</p> <p>타. 과태료의 부과·징수</p> <p>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p> <p>하.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호나목</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호의3다목 및 제4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의2</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5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5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9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0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0호의2</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1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2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2호의2</p> <p>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제13호</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p>6.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권한사항(적용 범위는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기관이 「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을 제외한다)</p> <p>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p> <p>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p> <p>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p> <p>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p> <p>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p> <p>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승인</p> <p>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p> <p>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p> <p>자. 법 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사용 등</p> <p>차.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p> <p>카.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p> <p>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 등의</p>	<p>「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p>	<p>시장·군수</p>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 시 계 획 과	<p>용도폐지 및 용도 폐지된 재산의 인계</p> <p>파.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p> <p>하.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p> <p>거.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p> <p>너. 법 제72조 및 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p> <p>더.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에3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p> <p>러.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p> <p>머. 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 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 양도·무상귀속 협의</p> <p>버.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p>		시장·군수
도 로 철 도 과	<p>1.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p> <p>가. 도로의 사용·수익허가</p> <p>나. 도로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허가</p> <p>2. 도로의 용도폐지</p> <p>3.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사항</p> <p>가.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공작물의 단속</p> <p>나. 접도구역 내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한 조치 또는 제한</p> <p>4. 건설기계 검사 등</p>	<p>「국유재산법」 제30조</p> <p>같은 법 제35조</p> <p>같은 법 제40조</p> <p>「도로법」 제50조제5항</p> <p>같은 법 제74조</p> <p>「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 철도과	<p>5. 위임국도에 대한 다음 사항</p> <p>가. 위임국도권리, 의무승계 등</p> <p>나. 국도유지업무</p> <p>다. 국도가 다른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 공사시행 및 유지조치</p> <p>라. 국도가 다른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유지</p> <p>마.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p> <p>바. 도로점용허가</p> <p>사. 도로점용공사 시행</p> <p>아. 점용료 부과, 징수</p> <p>자. 원상회복확인</p> <p>차. 비상재해시의 토지 사용 등</p> <p>카.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p> <p>타. 국도에 따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 연결허가</p> <p>파.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및 유지비용 부과, 징수</p> <p>하. 타공작물에 관한 도로공사 및 유지비용의 부과, 징수</p> <p>거.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p> <p>너.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 징수</p> <p>더.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p> <p>러. 공익을 위한 처분</p> <p>머. 수수료 징수</p> <p>버. 부담금 등 강제 징수 및 과오납금 반환</p> <p>서. 변상금 징수</p> <p>어. 과태료 부과, 징수</p>	<p>도로법 제4조</p> <p>같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p> <p>같은 법 제29조</p>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제31조</p> <p>같은 법 제38조</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41조</p> <p>같은 법 제43조</p> <p>같은 법 제47조</p> <p>같은 법 제49조제4항</p> <p>같은 법 제64조제2항</p> <p>같은 법 제74조</p> <p>같은 법 제75조</p> <p>같은 법 제76조</p> <p>같은 법 제77조</p> <p>같은 법 제83조</p> <p>같은 법 제84조</p> <p>같은 법 제89조</p> <p>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p> <p>같은 법 제94조</p> <p>같은 법 제101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하 천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하천에 있어서 하천의 점용 등 허가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2. 국가하천에 있어서 토지점용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3. 국가하천에 있어서 하천점용 등에 관한 공사의 대행(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 국가하천에 있어서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처분 5. 국가하천에 있어서 죽목의 재식 및 이에 따르는 처분 6. 국가하천에 있어서 원상회복의 명령, 원상회복 면제 의무 및 부속 공작물 등의 국·공유화 조치(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7. 국가하천에 있어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처분(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하천에 있어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로 한정 한다) 9. 국가하천에 있어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그 사용 등을 위한 처분 (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p>「하천법」 제5조</p> <p>같은 법 제33조제1항</p> <p>같은 법 제36조</p> <p>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p> <p>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69조</p> <p>같은 법 제70조</p> <p>같은 법 제75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하 천 과	<p>10. 국가하천에 있어서 보고의 수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조치(도지사에게 허가권이 있는 사항의 경우로 한정한다).</p> <p>11. 구거(「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을 포함한다)의 용도 폐지</p>	<p>같은 법 제75조</p> <p>「국유재산법」 제40조</p>	시장·군수
에 너 지 산 업 과	<p>1. 과태료의 부과징수 중</p> <p>가. 법 제73조제2항제9호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p> <p>나.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2. 보고의 징구 및 검사</p> <p>3. 전기용품의 파기 또는 수거 명령</p> <p>4. 발전시설 용량이 1,500KW 이하 발전사업(송·배전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전기사업의 허가</p> <p>나.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p> <p>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p> <p>라.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p> <p>마. 청문</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제1호</p> <p>같은 법 제78조제4항제11호</p> <p>「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1조</p> <p>같은 법 제8조</p> <p>「전기사업법」 제7조</p> <p>같은 법 제9조</p> <p>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항</p> <p>같은 법 제12조</p> <p>같은 법 제13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해 양 수 산 과	<p>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자금 지원</p> <p>4.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점검(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는 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로 한정한다)</p> <p>5. 법 제78조에 따른 중지·보수·개선 명령 등(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로 한정한다)</p> <p>6. 법 제61조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p> <p>7. 법 제63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및 필요한 조치 요청</p> <p>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수산물로 한정한다)</p>	<p>「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7호</p> <p>같은 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0호</p> <p>같은 법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21호</p> <p>같은 법 제61조</p> <p>같은 법 제63조</p> <p>「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해양수산물	<p>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출입 등(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3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출입 등으로 한정한다)</p> <p>10.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로 한정한다)</p>	<p>「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제33호</p> <p>같은 법 제70조제2항, 제74조 제1항,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6항제19호</p>	시장·군수
독도해양정책과	<p>1. 연안항에 관한 다음 사항</p> <p>가. 연안항만 대장의 작성 비치</p> <p>나. 동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운영의 위임·위탁, 항만시설 사용 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항만시설 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p> <p>다. 연안항에 관한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수리 및 항만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p>	<p>「항만법」 제23조</p>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제31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독도해양 정 책 과	<p>라.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마.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바.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 사. 필요시의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등 아. 타인 토지에의 출입 허가 자.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p> <p>차. 공용부담,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카. 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p> <p>2.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승인 및 당해 계획의 승인에 따른 협의·고시 및 통보(같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 따른 연안사업 및 같은 법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중 석축·옹벽 등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쓰레기 또는 폐선을 제거하는 사업, 해안편의점·휴식용 의자의 설치 등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p> <p>3. 연안의 오염실태 점검(「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중 무역항의 항만구역은 제외한다)</p>	<p>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p> <p>같은 법 제80조</p> <p>같은 법 제93조</p> <p>「연안관리법」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p> <p>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p>	시장·군수

관계법령 발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3회 이상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16. 10. 1.]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시행일:2017. 10. 1.]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그 외의 사업구역

제1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2. 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 계획 변경명령
3. 법 제19조에 따른 청문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 2018. 4. 17., 2018. 12. 31.>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⑧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⑨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7. 3. 21.>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⑪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3. 18., 2017. 3. 21., 2018. 4. 17.>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이하 “임시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의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⑬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19.>

⑤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운송사업자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7. 16.>

- ⑧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 ⑨ 삭제 <2018. 4. 17.>
- ⑩ 삭제 <2018. 4. 17.>
- ⑪ 삭제 <2018. 4. 17.>
- ⑫ 삭제 <2018. 4. 17.>
- ⑬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4. 17.>
- ⑭ 운송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 ⑮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 ⑯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 ⑰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 ⑱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 ①9 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2017. 3. 21.>
- ②0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 ②1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 ②2 운송사업자는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8. 14.>
- ②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8. 14.>
- ②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3. 7. 16.,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9., 2017. 3. 21., 2017. 11. 28., 2018. 3. 20., 2018. 8. 14.>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삭제 <2015. 6. 22.>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 3.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 4.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전문개정 2011. 6. 15.]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삭제 <2018. 4. 17.>

⑥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4. 17.>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 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사무실의 면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⑦ 운송주선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⑧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2017. 3. 21.>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④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21.>
- ⑤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제31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의 가입

6.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3. 18., 2015. 1. 6., 2015. 6. 22., 2018. 4. 17.>

1.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3.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7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 9의2. 삭제 <2017. 3. 21.>
10.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3.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3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삭제 <2015. 6. 22.>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0. 8. 11., 2012. 2. 2., 2012. 11. 27., 2013. 3. 23.>

1. 삭제 <2012. 11. 27.>

1의2.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2012. 11. 27.>

3. 삭제 <2012. 11. 27.>

4.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5.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6.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8. 법 제28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29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의 고시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9의2. 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국유·공유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 법 제46조제1항(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조 제3항(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에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법 제49조 및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 10의2. 법 제50조의3(법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1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 법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13.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4.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15. 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2. 2. 2., 2012. 11. 27., 2013. 3. 23.>
1.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

업승계의 신고수리

3.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4.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5.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6.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7.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8. 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만 해당한다), 제10호(준공인가 및 사용허가만 해당한다), 제10호의2 및 제15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8. 11., 2012. 2. 2., 2012. 11. 27., 2013. 3. 23.>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4. 4., 2012. 2. 1.>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가를 선정하고 독립가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립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임업후계자 또는 독립가가 선발·선정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임업후계자 또는 독립가가 사망한 경우
 3. 이 법 또는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임업후계자 또는 독립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자가 그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립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경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매장문화재법)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①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협의 후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그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1. 26.]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8. 3., 2019. 8. 27., 2020. 3. 17.>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조치명령. **다만, 사업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명령.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3. 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공고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鑑定),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2. 매장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3. 매장문화재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4.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5.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 부 칙 <제30531호, 2020. 3.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
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
 -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

書),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 바.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 사.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 자.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 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
- 카.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 타.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 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 하.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 거.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 너.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 더.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 러.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5. 1. 20., 2017. 4. 1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⑧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2019. 11. 26.>

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7. 8. 3., 2010. 3. 31., 2010. 7. 23., 2016. 12. 27., 2017. 4. 18.>

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 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⑧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⑩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7. 20.>

⑫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⑯ 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⑥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⑦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5. 1. 20.>
- ⑧ 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 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 ⑩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3의2. 삭제 <2017. 4. 18.>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 신고자

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시험·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17. 4. 18.>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⑥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7. 29., 2010. 6. 28., 2011. 1. 21., 2011. 9. 7., 2013. 5. 28., 2014. 1. 14., 2016. 1. 19., 2017. 10. 17., 2018. 1. 16.>

1.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 권고 및 점검·확인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나. 삭제 <2008. 7. 29.>

다. 삭제 <2008. 7. 29.>

라. 삭제 <2008. 7. 29.>

마. 삭제 <2008. 7. 29.>

바. 삭제 <2008. 7. 29.>

사.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명령

아.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

자.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차. 법 제4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및 비용징수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

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라.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마.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다.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

마.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바. 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사.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아.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징수 및 반환 등

자.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차.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카. 제24조 단서에 따른 사후관리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타.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파.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명세서의 수리

하.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거.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너.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더.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러. 제31조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머.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버.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

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어.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저. 제33조의2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처.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커.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②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7. 29., 2011. 9. 7., 2013. 5. 28., 2016. 1. 19., 2016. 7. 19., 2017. 10. 17.>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각 목의 권한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법 제39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1의3.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유해성기준 준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1의4. 삭제 <2013. 5. 28.>

1의5. 삭제 <2017. 10. 17.>

1의6. 삭제 <2017. 10. 17.>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 여부 알림

나. 법 제25조제3항·제4항·제7항·제11항 및 제15항에 따른 허가·변경 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다.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라.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마.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아.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자.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차.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명령

카.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의 접수

타.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파. 삭제 <2008. 7. 29.>

하. 삭제 <2008. 7. 29.>

거. 삭제 <2008. 7. 29.>

너. 삭제 <2008. 7. 29.>

더. 삭제 <2008. 7. 29.>

3.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의 수리

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라.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4호 각 목의 권한

4의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1. 14., 2016. 1. 19., 2016. 7. 19.>

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

2. 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변경지정

나.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다. 법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3.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분석 등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정·변경지정 및 그 내용의 공고
 - 나. 법 제17조의4에 따른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의 평가
 - 다. 법 제17조의5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명령 및 그 내용의 공고
 - 라.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 마.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시험·분석 수수료의 고시
 - 사. 삭제 <2016. 7. 19.>
5.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지정하고, 그 밖에 법령 불일치 조문 및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비용 수반 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임 군 호 (054-880-2126)